



이슈와 논점



이슈와 논점 | 제1174호 | 2016년 6월 1일 |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 발행인 임성호 | www.nars.go.kr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통해 본 「제조물 책임법」 개정 관련 주요 쟁점 박 지 영*

1. 들어가며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인하여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의 개정 필요성은 비단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뿐만 아니라 자동차 급발진 사고, 담배 소송 등 제조물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2000. 1. 12.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된 이후 내용상 큰 변화 없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하에서는 현행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주요 쟁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조물 책임법」의 주요 내용과 한계

(1) 주요 내용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0. 1. 12. 제정·공포되어 2002. 7. 1.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적용례를 두어 이 법 시행 후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제1조 및 법률 제6109호 제조물 책임법 부칙).

「제조물 책임법」은 제2조에서 제조물, 결함, 제조업자에 관하여 정의하고, 제3조에서 제조물 책임, 제4조에서 면책사유, 제5조에서 제조물 책임을 지는 자들의 연대책임, 제6조에서 면책특약의 제한, 제7조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제8조에서 「민법」의 적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조물 책임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면책사유가 없는 한 그의 고의·과실과 상관없이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제3조 및 제4조)으로써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제조물 책

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2) 한계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 결함에 따른 손해 배상책임을 무과실책임으로 규정하고, 그 면책 사유 역시 개발위험의 항변, 법령준수의 항변 등 특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차이를 보이지만 그 밖에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는 여전히 제조물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부담을 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제조업자의 이익은 막대한 반면 소액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의 유인(誘因)이 적어 제조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 「제조물 책임법」 개정의 주요 쟁점

(1) 입증책임 완화

제조물 책임소송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를 제기한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집약적 제품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자인 피해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 제품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 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그 사고

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며 그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다¹⁾’고 판시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급발진 소송, 담배 소송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구체적인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사례²⁾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결함의 존재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특별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³⁾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는 방안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활성화 및 제품의 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입증책임을 완화하거나 전환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찾기 어려운 점, 소송 남발 등으로 인한 기업 활동의 위축, 비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등

2) 자동차 급발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16771 판결, 담배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2092 판결이 있음.

3) 제19대 국회에 2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김관영의원, 김영록의원).

용 부담의 증가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저하, 비용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통상미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증거수집방법의 보완

변론주의의 원칙상 제조물 책임소송에서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의 책임은 당사자가 지고, 다툼 있는 사실의 인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제조물의 결함 및 인과관계에 관한 증거는 대부분 제조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인 원고가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증거의 편재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가 있는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제344조부터 제351조까지).

그러나 현행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⁴⁾ 등에는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있고,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

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경우에는 제출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⁵⁾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제출의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문서제출명령제도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거나 민사소송절차에 미국과 같은 증거개시제도⁶⁾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증거수집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의 증거수집방법을 보완하는 방안은 증거편재형 소송이라 할 수 있는 제조물 책임소송에 있어 당사자 간 실질적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문서제출명령의 기초가 되는 문서제출의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과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문서제출의무 범위의 확대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민사소송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증거개시제도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부담

4) 제315조(증언거부권) ① 증인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2.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문을 받을 때

② 증인이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대법원에서는 음성·영상자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66조에 따라 검증 목적물 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문서가 아닌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이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0. 7. 14. 자 2009마2105 결정).

6) 미국 민사소송상 증거개시(Discovery)제도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에 관련된 정보와 증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수집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다툼이 있는 쟁점을 확인·정리하고 계쟁쟁점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보전하는 변론 전 절차를 말한다.

을 증가시키고 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역시 「민법」에 따른 불법행위책임과 마찬가지로 실손해의 전보(填補)를 손해배상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손해규모는 적은 반면, 가해자가 그러한 가해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범위가 매우 큰 경우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물 책임 분야뿐만 아니라 신체와 재산에 악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⁷⁾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제재를 통하여 위법·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지(抑止)할 수 있고, 전보적 손해배상제도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7) 제조물 책임 분야에 관하여 제19대 국회에 1건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음(백재현의원).

8) 우리나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특별규정을 통하여 일정한 유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계에서 판례에 의하여 발전된 제도로서 민사적 책임에서 징벌적 요소를 인정하지 않는 대륙법계에 해당하는 우리 법제와는 맞지 않는다는 점, 징벌적 배상의 부여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전이 아니라 우연한 황재에 해당하므로 법적 정의에 부합되지 않고 남소를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 악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기능은 손해배상액의 현실화, 과징금 부과 등 기존의 민·형사 또는 행정절차를 정비하여 달성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4. 나가며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라는 경제구조를 특성으로 하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제조물의 결함은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 나아가 제조물이 기술집약적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는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제조물 책임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연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슈와 논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